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NO MORE DEATH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보 도 자 료	
	2020년 11월 24일(화)	기획팀장 정우준 010-9674-1247 조직팀장 정재현 010-3782-1871

┆ 이메일 nomoredeathact2020@gmail.com ┆ SNS www.facebook.com/nomoredeathact202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 촉구 운동본부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16시**
○ **장소 : 더불어 민주당사 앞**
○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 보도자료 순서

차 례

▢ 기자회견문

▢ [첨부 자료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 [첨부 자료 2]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법률 제정에 관한 법률 검토 의견서

▢ [첨부 자료 3]
더불어 민주당 장철민 의원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양대노총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동성명)

▢ [첨부 자료 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NO MORE DEATH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일정 : 2020년 11월 24일 (화) 16시
○ 장소 : 더불어 민주당사 앞
○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종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1 -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발언 2 - 강석경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CJ 진천공장 현장실습생 故 김동준 군 어머니 ○ 발언 3 - 허경주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민주당은 즉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서라!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농성 투쟁에 돌입하며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 사회, 시민들이 반복되는 재난 참사로 또 다시 희생되는 사회를 멈추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외쳐왔다. '다녀올게' 라고 인사했던 이 한마디를 지키기 위해, 또 다시 나와 같은 아픔을 겪는 가족이 없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싸워왔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지 않자 10만 시민 노동자와 함께 국민동의청원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언론을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연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하루 빨리 제정되어야 한다고 조명하고 있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시민 노동자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 정부와 정부 여당 민주당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정부가 되겠다, 임기 내 산재사망 노동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대체 무엇을 했는가. 10만 시민 노동자가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사위와 환노위에 회부되었지만, 심의조차 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수차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법안이니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정작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이 아닌 산재사망 노동자의 목숨 값을 고작 50만원 올리고 시민재난참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산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동자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와 다를 바 없다.

국민 여론 다수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동의하고 모든 언론이 나서서 법 제정을 말하고 있다. 기업살인법이 제정되어 있는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산재 재난 참사 예방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의당과 박주민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하고 국민의 힘까지 나서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 민주당은 더이상 머뭇거릴 이유도, 그럴 여유도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계속되는 시민 노동자 죽음의 행진을 멈추기 위해 오늘부터 민주당 앞 농성 투쟁에 돌입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민주당이 말뿐이 아닌 당론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채택하고 즉각 법 제정에 나서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10만 시민 노동자가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는 하루 빨리 응답하라!
21대 국회는 조속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서라!

2020년 11월 2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첨부자료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2020년 4월 말 이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 사고는 2008년 1월 발생했던 사고와 너무 똑같은 사고라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2008년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사건으로, 원청 회사인 ㈜코리아2000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2천만원, 원청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벌금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사망 노동자 한 명당 50만원에 불과한 벌금 이후 되풀이된 참사는 한국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한국 사회에 비등하게 했습니다. 대한직업환경의학회도 "21대 국회에서, 기업과 사업주가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보다는 이윤을 위해 법률과 제도에서 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업무 중 사상자가 발생하였을 때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 말에는 10만명의 시민들이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달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산업안전 관련 법안을 일부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인용된 여당 관계자는 "산업재해 중 한꺼번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를 제재하기 위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입법하겠다고 했습니다.

1. 산안법 개정으로는 원청과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의미를 더 강한 처벌에만 두기 때문에 나온 발상입니다. 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처벌 수위가 아닙니다. 기업의 최고책임자, 원청책임자, 그리고 기업 자체에 책임을 묻는다는, 처벌의 범위가 더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재해나 사회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제대로 처벌을 받아야 효과적인 안전조치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기업 최고경영진의 과실이 입증될 수만 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여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중간에 있는 책임자가 최고경영진의 의무를 대신하고 있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는 법망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에 대한 포괄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지게 하자는 것입니다.

또 실제 위험의 외주화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도급, 위탁의 경우에도 그 형식을 불문하고 실질적인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기단축이나 위험한 공법 사용으로 인한 재해에 대해 발주처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2. 산안법 개정으로는 기업에 의한 시민재해를 다룰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만으로는 기업의 탐욕과 잘못으로 벌어진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를 함께 다루려 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를 온전히 담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업환경의학 의사들은 자연과 사회 환경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사이,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등 기업 과실로 벌어진 사회적 참사를 목격해왔습니다. 이 참사들은 우리에게 노동자 건강과 시민의 건강이 밀접하게 연결돼있음을 알려주었고, 한국사회 전반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한국사회의 이런 역사적 맥락을 담아내야 합니다.

3. 처벌수위만 높여서는, 실제 법집행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처벌 수위를 높이기만 하는 것으로는 현장에서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도 안전조치나 보건조치 위반으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기준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경우 90.72%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법 조항의 처벌 수위는 점점 높아지지만, 현실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 된다면, 오히려 법에 대한 불신만 커질 수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책임을 쉽게 방기하고, 이를 쉽게 용인해주는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한국사회에 그런 상징적인 조치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는 여당에서 산안법 개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대신하려는 논의를 중단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올해 내에 추진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9일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 142명(전문의 110명, 전공의 32명)

전문의 : 강동묵 강모열 강진욱 강충원 강희태 고동희 공유정옥 곽경민 권기민 권영준 김규리 김규상 김대식 김대호 김명보 김성아 김세영 김세은 김수영 김은경 김정수 김정호 김진석 김철주 김태완 김현주 김형렬 노상철 도상윤 류지아 류현철 문현제 박계열 박성규 박승권 박승현 박재범 백도명 서동윤 손만기 손미아 송유준 송윤희 송재석 송재철 신경석 신덕용 신동희 심창선 안세진 안연순 안진홍 안현찬 양선희 엄준형 오경재 오장균 오재석 유상곤 육지후 윤명자 윤성용 윤종완 이경종 이고은 이동욱 이무식 이상윤 이영일 이예성 이의철 이이령 이재명 이정엽 이종석 이종인 이진우 이철갑 이철호 이현석 이현재 이혜은 이화평 임상혁 임신예 임종한 장규진 장은철 장태원 정경숙 정우철 정인성 정준익 정최경희 정필균 조민희 조성식 채홍재 천용희 천호선 최민 최순 최창기 최태성 최혜란 추상효 한영석 허현택 홍석우 홍정연

전공의 : 고권 김기훈 김양우 김예지 김지호 김호연 문은찬 박민영 박선욱 박재영 박충수 박현우 배성진 서광현 송지훈 안준호 엄강현 오현정 오현철 이은수 이인호 임채성 임현묵 장성욱 정새미 정지윤 주재한 주현우 차은우 채성렬 최성욱 최주호

[첨부 자료 2]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법률」 제정에 관한 법률 검토 의견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법률」 제정안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법률안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다음과 같이 법률 의견을 제출하오니 국회 논의과정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귀중

■ **첨부** 1. 민변(2016년)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2. 민변(2020년)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3. 2020년 7월 2일 운동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설명회 자료

1. 의견서 제출에 이르기까지

○ 지난 19대, 20대 국회에서 기업의 무한 이윤추구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는 없어야 한다면

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법률」(이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합니다)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회기마다 명칭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법안 통과는 고사하고, **제대로 된 심의조차도 없었습니다**.

○ 매일 2.34건의 산재 사망사고(2019년 고용노동부 통계), 그리고 중상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지만, 안전을 위한 노력은 비용으로 치환됩니다. 대형참사가 발생해도 현장 책임자에 대한 처벌로 이어질 뿐 사고의 반복을 방지하거나 안전을 중시하도록 변화를 꾀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책임자들에게는 이에 관한 책임을 직접 물을 수 없고 제재 효과도 없어 기존 법률의 개정이 아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왔습니다.

○ 이에 2020. 5. 27.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를 발족했습니다. **운동본부 소속 249개 단체**는 참여연대, 민변, 생명안전시민넷 등 시민단체, 민주노총과 같은 노동조합, 세월호 가족협의회와 김용균 재단 등 피해자 단체, 지역 노동·시민 단체들입니다.

○ 운동본부는 2020. 9. 22. 「국회법」과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서 30일 동안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서 **국민동의 청원**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본 제정법안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함께 **'전태일 3법'**으로 불리며 국민적 관심을 받았습니다.

○ 또한, 민변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해서 개진했습니다.

- **2016년 12대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선정
- **2020년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선정

○ 그러나 의견서 제출일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민변은 본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요지

가. 기업의 최고 책임자, 원청 책임자를 처벌

본 제정법안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포괄적인 위험방지의 무를 규정하고 그 위반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지우도록 하였습니다(제3조, 제5조 제1항). 또한 위험의 외주화로 인하여 다단계로 이뤄지는 도급, 위탁의 경우에도 형식을 불문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가 책임을 지도록 정합니다(제4조).

제정법안은 현행 산안법 제1조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 함을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대형참사가 발생하면 언론을 향해서만 '기업은 허리 굽혀서 사죄하고, 경찰과 노동부는 구속과 기소를 밝히고, 정부는 수십 페이지 대책을 발표하고, 정치권은 입법을 약속하는' 짜여진 일이 반복되는 것을, **이제는 중단하라**는 것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험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과 기관, 그리고 그 의사결정권자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했다', 그래서 '일일이 알 수 없다' 라는 이유로 처벌망을 빠져나갑니다. 즉 '꼬리 자르기' 로 현장 책임자만 처벌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또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714건의 산업재해 판결을 분석한 2018년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보고서(책임연구원 경북대 로스쿨 김성룡 교수)에 따르면, 2017년 처리된 13,187건 중 구속사건은 1건, 정식기소는 613건(4.64%)에 불과하고, 약식기소가 10,934건(82.91%)입니다. 그리고 산안법 위반 재범률은 97%로 일반 형법 범죄의 재범률인 43%에 비하여 2배로 같은 사업장에서 재해가 반복됨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 산안법이 원인 제공자인 의사결정권자와 기업 등을 가볍게 처벌하거나, 실제 처벌 받아야 하는 사람이 법망을 피해감으로써 사망이 반복됨이 실제로 입증되고 있는 셈입니다.

참고로, 2019년 산재 사고 사망자 855명을 사고 원인별로 보면, <떨어짐(347명, 40.6%), 끼임(106명, 12.4%), 부딪힘(84명, 9.8%), 깔림・뒤집힘(67명, 7.8%)>과 같이, **재래식 사고가 604명으로 70%**를 차지합니다(고용노동부, 2019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수십 개의 안전장치 중 단 하나도 작동하지 못했기에 발생한, 그래서 손쉽게 예방이 가능한 사망사고가 매일 2.34건씩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나. 다단계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

산안법은 다단계 하청 노동자에 대해서 원청의 안전조치, 보건조치 의무위반에 관하여 제한적인 형사책임만 묻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만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러나 본 제정법안은 종래의 근로관계의 틀을 벗어나서, 근로관계의 형태를 불문하고 사망사고의 원인 제공자를 찾아서 기소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5호). 이러한 제정법을 두고 사망사고라는 결과가 발생하면 무조건 책임을 묻는 태도라고 공격한다면 이는 의도적으로 논지를 흐리는 것입니다. 이미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처벌사례를 보면 일정한 경우 원청 사업주나 특수고용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제정법은 일반 형법으로 물어왔던 형사책임을 보다 분명하게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 노동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죽음에도 동일하게 적용

이 법은 산재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대구 지하철 참사, 삼풍백화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로 인한 시민들의 죽음에도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법입니다(제3조 제1항, 제3항).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면, 보상금을 높여 받으려 한다는 차가운 시선을 받아온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로 대한민국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피해자들은 서로 연대하고, 시민들도 피해자들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몇 년을 주기로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참사 또한 산재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처벌의 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의 수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법이 아닙니다. 안전에 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안전을 소홀히 한 결과 사망, 상해의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그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생명과 안전을 중시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참사의 예방을 꾀하고자 합니다.

라. 법인의 책임 강화

현행법은 법인의 독자적인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행위자인 자연인의 법 위반행위가 있고,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합니다(양벌규정). 본 제정법안 또한 현행법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제6조 제1항).

제정법은 이러한 현행법 체계를 따르면서도, 법인이 안전조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유도하고 법인이 부담해야 할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자 합니다. 1~2개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것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은 경험적으로 명백합니다. 단 1건의 사망사고라도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경미한 사고와 잠재적 사고가 반복된 끝에 발생합니다. 1명의 중상자가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경상자가 29명, 잠재적 부상자(아차사고)가 300명이 있었음을 의미한다는 '하인리히 법칙' 또는 1:29:300의 법칙은 90여년 전인 1931년에 이미 이를 경험론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사소한 잘못에 대해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나아가 이로 인한 피해를 가볍게 여기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더 큰 사고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사망사고를 보면 수십 개의 안전장치 중 단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은 법인(기업)의 책임을 보다 엄격하게 묻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 내부에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험방지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하는 등의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조항도 두고 있습니다(제6조 제2항).

마. 행정책임자 공무원의 관리·감독 책임

1999년 씨랜드 참사는 유치원생 19명과 인솔교사 및 강사 4명이 숨진 참사였습니다. 그런데 씨랜드 참사의 조사 도중에 담당 공무원이 인허가가 나서는 안 되는 곳에 허가를 내주었다는 내부고발이 드러났습니다. 수많은 산재 사건과 사회적 참사의 보이지 않는 원인에는 담당 공무원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있고, 심한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과 뇌물이 오간 정황도 종종 발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정법안은 산재와 사회적 참사의 원인에 있어 공무원의 부실

한 관리·감독이 드러나는 경우에 그 책임을 분명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제8조).

바. 징벌적 손해배상, 행정상 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더이상 낯선 제도가 아닙니다. 법무부는 2020. 9. 28. 상인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5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지우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법무부공고 제2020-295호). 또한 기존 법인 하도급법 제35조, 기간제법 제13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등에서도 3배 이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이에 산재와 사회적 참사의 경우에도 비슷한 참사의 반복을 막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제12조).

또한, 이 제정법안은 형사처벌이 이뤄진 경우 영업정지나 허가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6조 제3항, 제10조). 아울러, 자연인에 대한 보안처분과 유사하게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련 종사자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받게 하거나, 공무원의 정기적인 시설점검 및 현장감독을 수인하도록 하는 조항도 두고 있습니다(제6조 제3항 제3호, 제4항).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처벌사실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참사를 사회적으로 드러내는 조항도 두고 있습니다(제11조).

3. 산안법 개정으로는 부족한 이유

의견서를 작성하는 현 시점에서는 아직 산안법 개정안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법 제정안의 요지는 곧바로 산안법 개정이 부족한 이유가 됩니다.

가. 산안법 자체의 한계

무엇보다도 산안법은 행정법규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산안법상 의무위반이 전제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에 있지 아니한, 그리고 산안법상 의무위반이 아닌 안전보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관한 처벌 및 제재는 산안법 개정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나. 최고경영진에 관한 처벌

대표이사를 비롯한 최고경영진 등 의사결정권자, 달리 말하면 실질적 원인제공자에 관한 처벌이 산안법 개정으로도 가능한지 여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에, 산안법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서 그 책임자가 실질적으로 권한행사를 하는 한 최고경영진 책임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한, 최고경영진에 관한 형사처벌이 참사 예방의 측면에서 불필요하고, 나아가 법이론적으로 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고의입증이나 인과관계에 따른 책임추궁의 면에서 불가능하며 심지어 행위책임이 아닌 결과책임을 지우려는 입장이므로 위헌적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정법안은 기존 법이론을 존중하는 동시에 기존 이론이 갖는 한계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사법적 고의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관한 인식과 의욕을 요구합니다. 산안법 위반에서의 고의의 대상이 되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란 곧 산안법상 의무의 존재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입니다. 산안법 처벌은 사망사고에 이르게 된 의무의 존재와 의무불이행을 구체적으로 포착합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지는 자가 누구인지, 즉 어느 결재선까지 권한위임이 되는지를 되짚어 올라갑니다.

그러나 제정법안은 사망사고의 원인제공에 있어 최고경영진의 의사결정들이 개입되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지는 것이 합당하다는 태도입니다. 사망사고의 현장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본다면 직접적인 의무불이행 사실이 1~2개 정도로 추려지고 이것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특정하여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1~2개의 의무불이행이 아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무너짐에 따라 단 하나의 제동장치조차도 작동하지 않아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사고에 내재한 구조적인 원인을 포착하여 그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당하고, 그렇다면 그 형사책임을 지는 자는 최고경영진 등 의사결정권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에서, 영국의 기업살인법 또한 최고경영진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 제정법이 담고 있는 새로운 내용에 관한 미반영

그리고 이 제정법안이 담고 있는 새로운 내용들은 산안법 개정만으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회적 참사에 관한 처벌, 특수고용 노동자 등 변형된 근로관계의 당사자가 피해자인 경우에 관한 처벌, 공무원의 관리감독 책임, 징벌적 손해배상, 각종 행정상의 제재가 그것입니다.

4. 결어

제정본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요구함에 있어서 다른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기존과 같이 국회의원과 협력하거나, 정부가 입법안을 제출하라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제정법의 문제의식이 훼손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제정법안의 개별 조문이 논란의 여지가 크고 그래서 거센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문제의식이 훼손되지 않고 공론장에서 심사숙고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국민동의 청원이라는 형식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제정법안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암초를 만나 좌초될 우려에 처해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그에 따른 무거운 처벌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안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법의 조항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 동안의 논의와 검토를 거쳤으며,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직접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성안된 것이므로 충분히 심사숙고될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담아 국민동의 청원을 받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국회와 같은 공론장에서 충분히 논의되기도 이전에, 산안법 개정으로 인하여 무력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산안법 개정안을 우선에 두는 시도를 철회하고, 이 제정법안에 관한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거쳐서,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첨부 자료 3]

더불어 민주당 장철민 의원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양대노총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동성명)

- 산재사망 목숨 값 50만원 올리고, 가뭄에 콩 나듯 하는 근로감독 이행 확인의무 부여로 경영책임자 처벌? 노동자 시민 우롱하는 당정협의 장 철민 의원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규탄한다.
- 시민재해는 나 몰라라 하고 노동자 시민 우롱하는 더불어 민주당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 즉각 중단하고, 당론 채택과 초당적 협력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노동부와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가 오늘 결국 장철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 한다. 개정안은 최소한의 고민과 기대를 담기는 커녕 다시한번 국민을 우롱하고 있어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다.

첫째, 노동부는 2018년 2월 산재사망과 건설업 불법 하도급에 의한 산재사망에 대한 하한형 형사처벌을 입법예고 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하한형 형사 처벌은 아예 없다. 이미 평균 벌금이 450만원인데, 개정안의 개인 벌금 하한기준이 50만원 늘어난 500만원이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40명 사망에 2,000만원 벌금을 그렇게 규탄했는데, 개정안 법인 벌금 하한기준은 1,000만원 늘어난 3,000만원이다. 노동자 죽음에 쥐꼬리만큼 올린 벌금을 내 놓고, 돈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가? 이게 그렇게 강조했던 예방중심의 대책인가?

둘째, 말단 관리자가 아닌 경영책임자 형사 처벌이 재발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국민여론이 80%를 넘는다. 개정안에 대표이사 의무 부여는 중대재해 발생 대책과 근로감독 지적사항에 대한 확인의무를 부여 했다. 전체 사업장 대비 근로감독은 1%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 감독을 나오지 않는 99%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법상의 대표이사로 한정하고 있어 공기업,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그나마 위반 시 과태료도 1,000만원에 불과하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의지는 아예 없는 것이다.

셋째, 100억 이하 과징금 운운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100억 이하 과징금은 동시에 3명이상, 1년에 3명이상 사망 사업장이다. 당장 노동부 중대재해 통계를 뒤져보라, 과연 몇 개 사업장이 여기에 해당되는가? 과징금은 이미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에도 기업에 낮추고 낮출 수 있는 무한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데, 별도로 과징금 심의 위원회까지 두어 재고에 재고를 거듭하겠다고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커녕 이미 화학물질 관리법에 들어 와 있는 매출액 대비 과징금조차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더불어 민주당과 노동부가 그렇게 주장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하청과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처벌도, 공기단축을 강요하는 발주자 처벌도, 경영책임자 처벌과 기업이 재발장

지 대책을 세우게 하지도 못한다. 가습기 살균제 철도 지하철 선박의 시민재해는 아예 아무런 대책도 없다. 더불어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국회 연설을 비롯해 수차례 이번 회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국민의 힘은 20대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폐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초당적 협력을 공언했다.

10만명의 국민이 직접 입법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지금 국회 법사위에 게류 되어 있다. 21대 국회는 국민의 엄정한 명령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

- 노동부,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을 우롱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즉각 입법에 나서라
- 21대 국회는 초당적 협력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2020년 11월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법안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결과를 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영업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NO MORE DEATH

라. 그 밖에 공중을 상대로 교육·강연·공연 등이 행하여지는 장소

3. "공중교통수단"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의 선박

마. 「항공안전법」 제2조제1항의 항공기

4. "제조물"이라 함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임대, 용역,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6.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발주"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건설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는 "건설공사발주자"가 하는 발주

나. 조선사업의 경우, 「선박안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선박"(고정식 해양플랜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건조, 개조, 정비, 변경 등에 관하여, 가목의 "건설공사 발주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위있는 자가 하는 발주

8. "경영책임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의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다.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닌 자로서, 해당 법인의 사업상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자

제3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①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한다. 이하 같다),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거나 발주한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서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해

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위험방지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제51조, 제58조제1항, 제59조 제1항, 제60조, 제63조, 제64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제65조 제1항, 제69조 제1항, 제2항, 제8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

③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제4조(도급 및 위탁관계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의 귀속) 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임대, 용역, 도급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공동으로 제3조의 의무를 부담한다.

②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설비 등이 위탁되어 수탁자가 그 운영·관리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는 수탁자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공동으로 제3조의 의무를 부담한다.

제5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이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의 종사자에게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의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제1항의 행위로 사망을 제외한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2명 이상에 대하여 사망 또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長期) 또는 다액(多額)을 합산하여 가중한다.

제6조(법인의 처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주 및 법인의 경영책임자 등이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
2. 법인이 소유·운영·관리 또는 발주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

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서 그 법인의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사용인, 종사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때

3. 법인의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사용인, 종사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료를 취급하거나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제조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때

② 법인을 제1항에 따라 처벌할 때 법인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해당 기관의 전년도 수입액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다.

1. 법인의 경영책임자 등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

2. 법인 내부에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병과할 수 있다.

1. 영업허가의 취소

2. 5년 이내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영업정지

3. 5년 이하의 이행관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입찰자격 제한

④ 법원이 제3항 제3호의 이행관찰을 병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제3항 제1, 2, 4호 중 어느 하나의 제재를 가할 것을 판결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 회복
2. 관련 종사자의 정기적인 교육
3. 재발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개선조치
4. 공익적 급부제공
5. 공무원의 정기적인 시설점검 및 현장감독
6. 개선사항의 공개

제7조(인과관계의 추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법인,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제3조에서 정한 위험방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1. 당해 사고 이전 5년간 사업주, 법인,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제3조가 정하고 있는 의무와 관련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수사기관 또는 관련 행정청에 의해 3회 이상 확인된 경우
2.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당해 사고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현장을 훼손하는 등 사고 원인 규명, 진상조사, 수사 등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방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8조(공무원의 처벌) 공무원(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의 권한과 관련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야기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보건관리 의무의 준수 여부의 감독
2.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건축 및 사용에 대한 인·허가
3.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관련된 감독·인허가

제9조(양형절차에 관한 특례) ① 제5조, 제6조 또는 제8조의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21조에도 불구하고 판결로써 유죄를 선고한 뒤 따로 형의 선고를 위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양형심리를 위한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전문가위원회의 심사에 회부하거나 피해자 등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전문가위원회의 구성은 「형사소송법」의 양형절차에

관한 특례에 따른다. 다만 국민양형위원에 당해 사건의 피해자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④ 재판장은 형의 선고 시 제2항에 따라 확인된 심사결과, 피해자 등의 의견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전문가위원회 심사 결과나 피해자 등의 진술은 소송기록에 편철한다.

제10조(허가취소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1조(처벌사실 등의 공표) ① 법무부장관은 제5조, 제6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처벌의 결과 및 제10조에 따른 조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사용인 또는 종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의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야기하여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액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가해자의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 수준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가해자의 재산상태
7. 가해자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서 일어난 중대재해와 관련한 사업주, 법인, 기관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